

부속서 3-가
품목별 원산지 규정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|------------|
|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| | |
| 제1류 | 살아 있는 동물 | 완전생산기준 |
| 제2류 | 육과 식용 설육(脛肉) | 완전생산기준 |
| 제3류 주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.[치어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덩이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, 핑거링스(fingerlings), 파(parr), 스몰트(smolts) 및 엘버(elvers)를 포함한다] | | |
| 제3류 | 어류·갑각류·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 | 완전생산기준 |
| 제4류 | 낙농품, 새의 알, 천연꿀,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| 완전생산기준 |
| 제5류 |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| 완전생산기준 |
| 제2부 식물성 생산품 | | |
|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, 인경, 근경, 삽수, 접지, 접목, 싹,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 | | |
| 제6류 |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, 인경(鱗莖)·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, 절화(切花)와 장식용 잎 | 완전생산기준 |
| 제7류 | 식용의 채소·뿌리·괴경(塊莖) | 완전생산기준 |
| 제8류 |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, 감귤류·멜론의 껍질 | 완전생산기준 |
| 제9류 | 커피·차·마테(maté)·향신료 | 완전생산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|--|
| 제10류 | 곡물 | 완전생산기준 |
| 제11류 |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, 전분, 이눌린(inulin), 밀의 글루텐(gluten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0701호, 제0710호, 제 0714호 또는 제1006호 의 것은 제외한다) |
| 제12류 | 채유(採油)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, 각종 종자와 과실, 공업용·의약용 식물, 짚과 사료용 식물 | 완전생산기준 |
| 제13류 | 락(lac), 검·수지·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 | 완전생산기준 |
| 제14류 | 식물성 편조물(編組物)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| 완전생산기준 |
| 제3부 | | |
| 동물성·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,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·식물성 납(蠟) | | |
| 제15류 | 동물성·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,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·식물성 납(蠟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부 | | |
| 조제식료품과 음료·알코올·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| | |
| ex 제16류 | 육류·어류·갑각류·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의 조제품. 다음을 제외함.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1603 | 육·어류·갑각류·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의 추출물(extract) 과즙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) |
| ex 1604 |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, 캐비아, 어란(魚卵)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. 다음을 제외함.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) |
| 1604.20 |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ex 1605 1605.54 1605.59 |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·연체동물·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추동물. 다음을 제외함. 갑오징어와 오징어 기타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)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17류 1703 1704 | 당류(糖類)와 설탕과자. 다음을 제외함. 당밀(糖蜜) [당류(糖類)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] 설탕과자(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,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)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18류 1801 | 코코아와 그 조제품. 다음을 제외함.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19류 1901.10 1905 | 곡물·고운 가루·전분·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. 다음을 제외함. 영유아·어린이용 조제 식료품(소매용으로 한정한다) 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(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, 성찬용 웨이퍼·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·실링웨이퍼(sealing wafer)·라이스페이퍼(rice paper)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)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20류 2003.90 | 채소·과실·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. 다음을 제외함. 기타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-|--|
| 2004.10 | 감자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005.20 | 감자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005.91 | 죽순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005.99 | 기타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006.00 |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·과실·견과류·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[드레인한 (drained) 것,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1. 김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(소호 제1212.21호 또는 제 1212.29호의 것은 제외한다), 2.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008.99 | 기타 | |
| ex 제21류 | 각종 조제 식료품. 다음을 제외함.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(소호 제 1211.20호 또는 제 1302.19호의 것은 제외한다) |
| 2106.90 | 기타 | |
| ex 제22류 | 음료·주류·식초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2202.99 | 기타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(소호 제 1211.20호 또는 제 1302.19호의 것은 제외한다) |
| 2204.21 |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204.22 |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204.29 | 기타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205 | 베르무트(vermouth)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[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(芳香性)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]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207 |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변성 에틸알코올, 그 밖의 변성 주정(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) |
| ex 제23류 |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(waste), 조제 사료. 다음을 제외함.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2309 | 사료용 조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24류 |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. 다음을 제외함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2401 |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5부 광물성 생산품 | | |
| ex 제25류 | 소금, 황, 토석류(土石類), 석고·석회·시멘트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501 | 소금(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), 순염화나트륨[수용액(水溶液)인지 또는 고결(固結)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과 바닷물. |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514 | 슬레이트[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516 | 화강암·반암(斑巖)·현무암·사암과 그 밖의 석비(石碑)용·건축용 암석[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2517.49 | 기타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26류 | 광(鑛)·슬래그(slag)·회(灰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|-----|------------|
| <p>제27류 주</p> <p>주 1. 이 류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.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(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.</p> <p>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 다.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</p> <p>주 2. 제2710호의 목적상, 다음의 공정들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.</p> <p>가. 상압증류법: 석유가 증류탑에서 비등점에 따라 분획되는 분리공정. 그 후 증기가 상이한 액화 분획물로 응축되며, 액화석유가스, 나프타, 휘발유, 등유, 디젤(난방유), 경유 그리고 윤활유 기유가 석유의 상압증류법으로 생산된다.</p> <p>나. 감압증류법: 대기압보다 낮지만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. 감압증류법은 석유에 포함된 중질 증류액과 같이 비등점이 높은 열에 민감한 제품을 증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, 이를 통해 경질·중질 감압경유 및 잔사유를 얻는다. 일부 정유공장에서는 윤활유의 주성분을 얻기 위하여 경유가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.</p> <p>다. 촉매 수처리: 특수 촉매가 존재하는 고온 및 압력에서 수소로 석유 유도체를 분해 및/또는 처리하는 것. 촉매 수처리는 수소 분해 및 수소 처리를 포함한다.</p> <p>라. 개질(촉매 개질): 나프타의 비등 범위에 있는 분자를 재배열하여 더 높은 옥탄 아로마틱(예: 가솔린 수율을 희생하여 안티녹(anti-knock)제의 품질 개선)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. 주요 생성물 중 하나는 촉매 개질로, 가솔린의 혼합 성분으로 사용된다. 이 과정에서 수소를 부산물로 얻는다.</p> <p>마. 알킬화: 아이소파라핀과 올레핀을 촉매적으로 결합하여 고옥탄 가솔린을 얻는 과정</p> <p>바. 분해: 열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자 분해 및 재결합을 수반하는 정제 공정으로,</p> | |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-|---|
| <p>이들이 결합하여 모터 연료, 단량체 등을 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자를 형성한다.</p> <p>사. 코킹: 감소된 원유, 분해 잔류물, 타르 및 셰일 오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중질 잔류 탄화수소가 고온에 의하여 탄소로 전환되는 열분해 공정으로, 또한 정유공장의 다른 공정 단위의 공급 원료로 사용될 준비가 된 낮은 비등 온도의 탄화수소 분획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전환되는 공정이다. 그리고</p> <p>아. 이성질화: 등분자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가 해당 이성질체로 변환되는 석유 정제 공정</p> <p>주 3. 제2710호에서, “직접 혼합”은 탱크에 저장된 상이한 가공 단위 및 성분의 석유 혼합물들이 제2710호에 분류된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완성품을 생성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정제 공정을 말한다.</p> | | |
| 제27류 | 광물성 연료·광물유(鑛物油)와 이들의 증류물, 역청(瀝靑)물질, 광물성 왁스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</p> <p>제6부 주</p> <p>이 부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.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(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.</p> <p>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</p> <p>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</p> <p>다.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</p> | | |
| ex 제28류 | 무기화학품, 귀금속·희토류(稀土類)금속·방사성원소·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|---|
| 2804.61 |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.99 이상인 것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29류 | 유기화합품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30류 | <p>의료용품. 다음을 제외함.</p> <p>의약품[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)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3002호·제3005호·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]</p> |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)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|
| ex 제31류 | <p>비료. 다음을 제외함.</p> <p>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(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·인·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그 밖의 비료,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(tablet)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</p> | <p>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|
| ex 제32류 | 유연용·염색용 추출물(extract),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, 염료·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, 페인트·바니시(vernish), 퍼티(putty)와 그 밖의 매스틱(mastic), 잉크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3204 | 합성 유기착색제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(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, 형광증백제(螢光増白劑)나 루미노퍼(luminophore)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3206 | <p>다)</p> <p>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(제3203호·제3204호·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,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, 루미노퍼(luminophore)로 사용되는 무기물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</p>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33류 3301.90 | <p>정유(essential oil)와 레지노이드(resinoid), 조제향료와 화장품·화장용품. 다음을 제외함.</p> <p>기타</p> |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(소호 제 1211.20호 또는 제 1302.19호의 것은 제외한다)</p> |
| 제34류 | 비누·유기계면활성제·조제 세제·조제 운활제·인조 왁스·조제 왁스·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·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·조형용 페이스트(paste)·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(plaster)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35류 | 단백질계 물질, 변성전분, 글루(glue), 효소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36류 | 화약류, 화공품, 성냥, 발화성 합금, 특정 가연성 조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-|---|
| 제37류 |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38류 3825 | <p>각종 화학공업 생산품. 다음을 제외함.</p> <p>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, 생활폐기물, 하수 찌꺼기,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</p> | <p>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</p> <p>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28류, 제37류, 제40류 또는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)</p> |
| <p>제7부</p> <p>플라스틱과 그 제품, 고무와 그 제품</p> <p>제7부 주</p> <p>이 부의 목적상, “화학반응”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.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(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.</p> <p>가.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</p> <p>나. 용제(용매물을 포함한다)의 제거, 또는</p> <p>다.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</p> | | |
| 제39류 | 플라스틱과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0류 | 고무와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-|---|
| 제8부 원피·가죽·모피와 이들의 제품, 마구, 여행용구·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, 동물 거트(gut) [누에의 거트(gut)는 제외한다]의 제품 | | |
| 제41류 | 원피(모피는 제외한다)와 가죽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2류 | 가죽제품, 마구, 여행용구·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, 동물 거트(gut) [누에의 거트(gut)는 제외한다]의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3류 | 모피·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9부 목재와 그 제품, 목탄, 코르크와 그 제품, 짚·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(組物) 재료의 제품, 바구니 세공물(籠細工物)과 지조세공물(枝條細工物) | | |
| 제44류 | 목재와 그 제품, 목탄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5류 | 코르크(cork)와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46류 | 짚·에스파르토(esparto)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, 바구니 세공물(basketware)과 지조세공물(枝條細工物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, 회수한 종이·판지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], 종이·판지와 이들의 제품 | | |
| 제47류 |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, 회수한 종이·판지[웨이스트(waste)와 스크랩(scrap)]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48류 | 종이와 판지, 제지용 펄프·종이·판지의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49류 | 인쇄서적·신문·회화·그 밖의 인쇄물, 수제(手製)문서·타자문서·도면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| | |
| ex 제50류 | 견. 다음을 제외함. 5001 누에고치(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 5002 생사(끈 것은 제외한다) 5003 견 웨이스트(waste)[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, 실 웨이스트(waste),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5006 견사·견방사(소매용으로 한정한다), 누에의 거트(gut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ex 제51류 | 양모·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·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. 다음을 제외함. 5101 양모[카드(card)하지도 코움(comb)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[카드(card)하지도 코움(comb)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 5103 양모·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(waste)[실의 웨이스트(waste)를 포함하며,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은 제외한다] 5104 양모·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|---|
| 5105 | 양모·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[카드(card)하거나 코움(comb)한 것으로 한정하며, 코움(comb)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109 |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(소매용으로 한정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ex 제52류 | 면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5201 | 면[카드(card)하지도 코움(comb)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202 | 면 웨이스트(waste) [실 웨이스트(waste)와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203 | 면[카드(card)하거나 코움(comb)한 것으로 한정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53류 |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, 종이실(paper yarn)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5301 | 아마(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아마의 토우(tow)와 웨이스트(waste) [실의 웨이스트(waste)와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302 | 대마(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대마의 토우(tow)와 웨이스트(waste) [실의 웨이스트(waste)와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303 |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(靱皮)섬유[아마·대마·라미(ramie)는 제외하며,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, 이들 섬유의 토우(tow)와 웨이스트(waste) [실의 웨이스트(waste)와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|--|
| 5305 | 코코넛·아바카(마닐라마)·라미(ramie)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(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이들의 투우(tow)·노일(noil)·웨이스트(waste) [실의 웨이스트(waste)와 가닛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54류 | 인조필라멘트,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(strip)과 이와 유사한 것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, 제5205호부터 제 5206호까지,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, 제 5404호,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5401 |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(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402 | 합성필라멘트사(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,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403 | 재생·반(半)합성 필라멘트사[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,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·반(半)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]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404 | 합성모노필라멘트(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(strip)이나 이와 유사한 것[예: 인조스트로(straw)](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405 | 재생·반(半)합성 모노필라멘트(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, 재생·반(半)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(strip)이나 이와 유사한 것[예: 인조 스트로(straw)](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406 | 인조필라멘트사(재봉사는 제외하며, 소매용으로 한정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|--|
| ex 제55류 | 인조스테이플섬유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(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5501 | 합성필라멘트 토우(tow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2 | 재생·반(半)합성 필라멘트 토우(tow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3 | 합성스테이플섬유[카드(card)·코움(comb)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4 | 재생·반(半)합성 스테이플섬유[카드(card)·코움(comb)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5 | 인조섬유의 웨이스트(waste)[노일(noil)·실의 웨이스트·가넷스톡(garnetted stock)을 포함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6 | 합성스테이플섬유[카드(card)·코움(comb)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507 | 재생·반(半)합성 스테이플섬유[카드(card)·코움(comb)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]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56류 | 워딩(wadding)·펠트(felt)·부직포, 특수사, 끈·배의 밧줄(cordage)·로프·케이블과 이들의 제품. 다음을 제외함.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5603 | 부직포(침투·도포·피복·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57류 |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58류 | 특수직물, 터프트(tuft)한 직물, 레이스, 태피스트리(tapestry), 트리밍(trimming), 자수 천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59류 | 침투·도포·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,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60류 |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, 제5205호부터 제 5206호까지,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, 제 5404호,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 |
| 제61류 | 의류와 그 부속품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,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,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,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). 다만,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(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)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. |
| 제62류 | 의류와 그 부속품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)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,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,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,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). 다만,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(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)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.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|---|--|
| 제63류 |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의 그 밖의 물품, 세트, 사용하던 의류·방직용 섬유제품, 냅마 | 2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,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,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,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). 다만,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(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)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. |
| 제12부 신발류·모자류·산류(傘類)·지팡이·시트스틱(seat-stick)·채찍·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, 조제 깃털과 그 제품, 조화,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| | |
| 제64류 | 신발류·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, 이들의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65류 | 모자류와 그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66류 | 산류(傘類)·지팡이·시트스틱(seat-stick)·채찍·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67류 | 조제 깃털·솜털과 그 제품, 조화,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3부 돌·플라스터(plaster)·시멘트·석면·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, 도자제품, 유리와 유리제품 | |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|---|---|
| 제68류 | 돌 · 플라스터(plaster) · 시멘트 · 석면 · 운모 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69류 | 도자제품 | 2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70류 | 유리와 유리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4부 천연진주 · 양식진주 · 귀석 · 반귀석 · 귀금속 ·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, 모조신변장식용품, 주화 | | |
| ex 제71류 | 천연진주 · 양식진주 · 귀석 · 반귀석 · 귀금속 ·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, 모조신변장식용품, 주화. 다음을 제외함.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(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·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) 7102 다이아몬드(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) 7103 귀석(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)과 반귀석(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 ·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) 7104 합성 ·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(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,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7106 | 은(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, 가공하지 않은 것·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)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7108 | 금(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, 가공하지 않은 것·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)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7110 | 백금(가공하지 않은 것·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)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5부 비금속(卑金屬)과 그 제품 | | |
| 제72류 | 철강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73류 | 철강의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74류 | 구리와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75류 | 니켈과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ex 제76류 | 알루미늄과 그 제품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7601.20 | 알루미늄 합금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-|---|
| 7605 | 알루미늄의 선 | 4단위 세번변경기준(제 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)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78류 | 납과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79류 | 아연과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80류 | 주석과 그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81류 | 그 밖의 비금속(卑金屬), 서멧(cermet), 이들의 제품 | 6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82류 |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공구·도구·칼붙이·스푼·포크, 이들의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83류 |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각종 제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6부 기계류·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, 녹음기·음성 재생기·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·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·부속품 | | |
| 제84류 | 원자로·보일러·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85류 | 전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·음성 재생기·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·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·부속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7부 차량·항공기·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| | |
| 제86류 |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·차량과 이들의 부분품,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, 기계식(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)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|---|---|
| ex 제87류 |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·부속품. 다음을 제외함.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8701 | 트랙터(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) |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8702 | 10인 이상(운전자를 포함한다) 수송용 자동차 |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8703 |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[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, 스테이션왜건(station wagon)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] |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8704 | 화물자동차 |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8705 | 특수용도차량(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)[예: 구난차(breakdown lorry)·기중기차(crane lorry)·소방차·콘크리트믹서 운반차·도로청소차·살포차·이동공작차·이동방사선차] |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88류 | 항공기와 우주선, 이들의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89류 | 선박과 수상 구조물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8부 광학기기·사진용 기기·영화용 기기·측정기기·검사기기·정밀기기·의료용기기, 시계, 악기,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| | |
| 제90류 | 광학기기·사진용 기기·영화용 기기·측정기기·검사기기·정밀기기·의료용 기기,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|--|---|
| 제91류 | 시계와 그 부분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92류 |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19부 무기·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| | |
| 제93류 | 무기·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20부 잡품 | | |
| 제94류 | 가구,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 (mattress support)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·조명기구,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 (name-plate)와 이와 유사한 물품, 조립식 건축물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제95류 | 완구·게임용구·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
| ex 제96류 | 잡품. 다음을 제외함. 위생 타월(패드)·탐폰(tampon), 유아용 냅킨·냅킨라이너(napkin liner)와 이와 유사한 물품(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)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|
| 제21부 예술품·수집품·골동품 | | |

| HS 2017 | 품목명 | 품목별 원산지 규정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제97류 | 예술품 · 수집품 · 골동품 |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|